

[별표 3] <개정 2021. 6. 1.> <개정 2021. 8. 25.> <개정 2023. 12. 1.> <개정 2024. 3. 22.>
 <개정 2024. 8. 1.> <개정 2025. 4. 3.> <개정 2025. 5. 19.> <개정 2026. 1. 2.> <개정 2026. 4. 17.>

기타수당의 종류 지급기준표

수당 종류	지 급 기 준	지 급 액	비고
시간외 근무수당	• 사전근무명령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	• 월통상임금×1.5/209×시간	직책수행비를 지급 받는 관리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
야간 근무수당	• 야간근무자(22시~익일6시)	• 월통상임금×0.5/209×시간	
휴일 근무수당	• 휴일근무명령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	• 월통상임금×1.5/209×시간 - 8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가산 기준에 따름	
명절 휴가비	• 설날, 추석날 각 1/2 지급	• 월 기준급여 110% • 예산범위내에서 지급	
연차수당	•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지급	• 월통상임금×1/209×8시간×일수	
가족수당	•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준용		
<삭제>	<삭제>		
직책수행비	• 대표이사, 본부장, 실장, 팀장	• 대표이사 월 600,000원 • 본부장 월 400,000원 • 실장, 팀장 월 200,000원	
관리업무수당	• 실장, 팀장, 파트장	• 실장, 팀장 월 450,000원 • 파트장 월 130,000원	
안전관리자수당	• 위험물취급 등 안전관리 법정선임자	• 월 30,000원	
특정업무수행비	•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	• 월 80,000원	
자격수당	• 사서, 기술 등 해당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	• 월 30,000원	예산범위내에서 지급
현장대민수당	• 직책수행비, 관리업무수당, 특정업무수행비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직원	• 월 30,000원	
정근수당 가산금	•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[별표2]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준용 • 재단에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 (중량구시설관리공단 승계직원 기존 근무기간 인정)		
정액급식비	• 2급이하 직원 및 공무원직	• 월 120,000원	
교통비	• 2급이하 직원 및 공무원직	• 월 80,000원	
대행업무수당	•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	• 월 지급금액=월 200,000원 ×(1/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)	예산범위내에서 지급
보전수당	•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된 직원	• 현 기준급여 - 적용된 호봉금액	
평가급	•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적용		
생활임금 보전수당	• 월 통상임금이 중량구 생활임금 기준액(월액)에 미달하는 자	• 중량구 생활임금 기준액(월액) - 해당 직원의 월 통상임금	